

근로자 건강진단의 개선방안



◇ 좌담자: 대한산업보건협회장 조규상 ◇
 노동부 근로기준국장 한병익
 한국경영자총협회상무이사 이상윤
 한국노동조합총연맹사회복지국장 이인재
 순천향의과대학교수 남택승

사회(조규상 회장): 오늘날 발전되어 가고 있는 우리나라의 산업사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모든 국민의 복지이고 특히 근로자들의 건강문제는 우리나라 현 사회의 복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과제로 되었습니다.

근로자들의 건강진단은 근로자들의 건강을 관리하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의 하나로 이 제도가 근로기준법에 규정되어 시행령이 나온 1963년부터 전국적으로 사업장에서 정기건강진단이 실시되어 왔습니다.

지금껏 20여년이 흘렀지마는 오늘날까지도 근로자들의 건강진단은 여러가지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이제는 근로자들의 건강진단이라는 것이 어떤 수익사업이 아니라 근로자들을 위한 참된 공익사업으로서 토착화 되어야 할 시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간 건강진단이라든지 의료에 있어서 사회적 인 물의를 일으키는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의료인의 입장에서 매우 유감스럽고 책임을 느끼는 바입니다. 이런 시기

에 우리는 어떻게 하면 근로자들을 위한 건강진단을 참된 방향으로 정착시킬 수 있겠느냐 하는데 오늘 좌담회의 의미를 두고 각 분야에 계신 분들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이 인재 국장 : 산업보건이라 하면 산업현장에서 일어나는 재해를 어떻게 줄이느냐에 초점이 맞추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지구상에서 사람이 존재할 수 있는 것은 자연환경이 사람을 보호해 주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바꾸어 생각한다면 사람이 기업에 취업을 해가지고 병이 걸리게 됨은 그 사람의 선천적, 후천적인 것도 있겠지만, 그 기업의 환경이 그 사람으로 하여금 건강진단을 하게 만든 결과가 되지 않았느냐 하는데서 산업보건의 출범되어야 한다고 여겨집니다.

현행 법에는 사업주 책임하에 년 1회 이상 근로자에 대한 건강진단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으나 비용절감 또는 건진수주를 둘러싸고 덤핑행위가 이루어져 건진이 형식적으로 전락되고 있어 건강진단이 정말로 누구를 위한 제도이며 이렇게 해서 재해방지를 할 수 있는 것인가 하는 문제에 의심이 갑니다.

예를 들어서 건강진단을 하기 위한 열 세가지의 검사를 과연 1인당 몇천원으로 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와 의료기관에서는 근로자를 보호한다며는 어떻게 그 수가마저 덤핑을 해서 과연 올바른 건강진단을 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 이것들이 다 인간을 위해서 진행되고 있는 것이냐, 의료기관이나 사업주를 위해서 하고 있는 것인가 하는 점을 제기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이 건강진단을 실시하기 전에 주지해야 할 것은 우리는 경제성장을 20년 동안 급속도로 빨리 추진해 왔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에게 맞지않는 기계와 맞지않는 환경, 또 연간 약 60만종의 유해물질을 원자재로 수입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얼마큼 위험요소가 있고 유해물질인가 하는 것을 전체 국민이나 또는 근로자들이 인식하고 있는가 하는 문제도 되어 있지 않습니다.

외국의 경우는 국민학교 때부터 안전과 보건에 대한 인식이 기초부터 시작되어 전국민이 건강과 보건에 대한 인식이 통일화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이러한 인식이 교육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연유로 기업주는 비용이 많이 든다하여 건강진단을 기피하고 있으며 근로자는 현장에서 병이 나 노출되면 그 직장에서 쫓겨나게 됨으로 해서 거부하게 되고 회사로서는 유해물질 작업장이다 또는 직업병자가 많다 하고 노출되면 정부나 언론으로부터 받는 제재와 그로 인한 피해와 부담을 우려하여 더욱 문제가 심각하게 이른것 같습니다.

첨언해서 1964년부터 경제발전을 추진하여 현재 20여년 지내오는 동안 산업현장에서의 직업병자와 재해자 또는 정신질환자등 부상자와 질환자는 160만명 정도로 집계되었으며 사망자는 2만여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매년 한번씩 경각심을 불러 일으키기 위해서 그 통계를 보고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이런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는 정부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의 보건규칙을 보다 국민적 차원에서 홍보해 주고 또 병원당국에서는 좀더 히포크라테스의 정신으로 건강진단도 해 주셔야 하며 수가도 합리적으로 책정되어 날림진단을 안하고 올바른 진단을 할 수 있게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근로자 스스로도 자기 생명과 건강을 위해서 철저히 건강진단에 응해 줘야 될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노사현장에서 사용자와 근로자간의 의견일치로 이루어지고 또한 주무당국에서는 여기에 맞춰 폭넓고 깊게 건강진단에 신경써 줘야 될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산업현장에 있는 근로자의 건강진단보다는 그 현장, 그 기업체의 환경이 근로자가 과연 일을 할 수 있는 좋은 환경이나 하는 점부터 진단하고 건강진단을 착수하는 것이 옳지 않나 생각합니다.

사 회 : 건강진단을 하기 위한 건강진단이 아니라 건강하게 일할 수 있도록 유해한 인자를 없애는 근본대책이 시급하고 무엇보다도 인간의

생명과 건강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근로자 건강진단은 각계 모든 분야에서 주력해야겠다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에 대해 기업의 입장에서 하실 말씀이 있으실텐데 ……

이 상윤 상무: 근로자가 건강해야 된다는 점과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는 건강진단이 정확하게 이루어져서 질병자를 조기에 발견하고 확실하게 사후관리를 해 나가야 된다는 사실을 그 누구도 부정하지 않으면서도 이러한 이들이 왜 잘 안되는가 하는 원천적인 문제를 우리는 해마다 제기하고 토론을 벌이고 있습니다.

근로자 건강진단이 형식화, 부실화되는 그 원인이 무엇인가에 대해 기업주들의 인식이 덜 되었고 또 의료기관에 일부 문제가 있다고만 할 것이 아니라 이 문제는 근로자가 건강해야 되고 건강진단이 중요하다는 공통인식을 두고 행정관청과 사용자, 근로자, 의료기관 모두가 공동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그와 같은 일들이 잘 안되는 요인이 무엇인가에 구체적으로 접근해서 건강진단을 기피하게 되는 불신의 요인은 무엇인가를 살펴야 될 것입니다.

우선 사용자측에서 보더라도 근로자가 건강해야 생산성이 올라가고 또 그렇게 되면 기업도 번성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건강진단을 왜 기피하게 되느냐 하는데는 몇 가지 현실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첫째는 비용감각을 지니고 있는 기업주로서는 무엇보다도 비용에 관심을 가질 수 밖에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적은 비용으로 많은 일, 많은 성과를 올린다는 것이 바탕에 깔려 있는 것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기업주는 건강진단을 한다하면 1차적으로 비용문제를 생각하게 되며 그러한 비용들이 어떻게 하면 합리적으로 근로자 건강이라고 하는 측면과 장기적인 안목에 있어서의 비용관리 측면에서 조화있게 지출될 수 있느냐 하는 문제를 생각하게 됩니다.

둘째는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하다 보니 시기를 미룬다던가 교대근무로 빠진다던가 하는 불합리도 나올 수 있습니다.

셋째는 현실적으로 건강진단을 한 뒤 여러 가지 오는 문제가 있습니다. 사업장에서 병자가 발견되었을 경우 작업전환을 시켜야 되고 노무관리면에서 취업금지시켜야 되고 또 그런 후에 법적 책임문제가 복잡하게 뒤따라 오는데 그러한 문제들이 어느 정도 해결되었을 때 기업주로서 안심할 수 있느냐에 대한 지침이 구체적으로 되어 있지도 않기 때문에 기업주 입장에서 기피하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또 근로자 측면에서 볼 때 근로자 자신들도 건강해야 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기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이유를 보면,

첫째는 자신이 질병자로 발견되었을 때 동료들이 알게 됨으로서 오는 직장생활의 정신적 불안과 그로 인한 휴직과 퇴직 등의 문제점이 발생되며, 그 질환이 직업성일 경우는 한가지 산재보험업무상 재해라고 해서 휴업할 수 있는 보장장치가 있지만 사적으로 발생된 질병일 경우 휴직, 퇴직이 발생되면 비록 완쾌가 된 후에도 사후대책이 없는 현실에서 근로자들은 건강진단을 받는 것을 기피하는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 다음으로 의료기관측을 살펴보면 근로자 건강진단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그에 필요한 인력과 장비를 투입해야 하는데 사명감과 보람, 사회적인 책임만을 내세울 수 있는 자선사업이 아닌 한 수입보장도 있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건강진단을 하기 위해 시간을 소요하고 그 후의 결과보고 및 복잡한 문제가 오는 것을 감수하면서 강요에 의해 실시해야 되는 측면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 드린 바와 같이 이러한 기업주, 근로자, 의료기관의 당사자들이 지니고 있는 자기 문제점들을 어떻게 극소화 시켜 가면서 문제를 풀어가느냐 하는 것을 이제는 구체적으로 접근해야 할 시기로 보며 막연하게 법을 안 지키다. 기업주의 생각이 잘못되어 있다. 또는 의료기관의 일부가 잘못하고 있다 하는 식으로 몰아부칠 수 만은 없는 것입니다.

저도 과거에 정부에 있던 사람으로서 정부입

장을 말씀드리면 솔직히 이때까지 정부는 사건이 생기거나 문제가 발생되면 책임추궁과 감독하는데만 열중하여 왔지 원래의 원천적 기능에는 소홀해 왔지 않았느냐 하는 겁니다. 노총의 사회복지국장께서 지적해 주셨지만 정부에서는 그저 책임추궁만 하지 말고 기업주가 미리 대처할 수 있는, 즉 어디가 유해위험 작업부서이며 어느 종업원들이 특수검진 대상이다 또는 그러한 부서에는 어떤 조치를 해야 한다 하는 구체적인 지침과 방향을 주고 뭔가 문제점을 풀 수 있는 방향을 줘야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이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는 항상 이상과 현실에 괴리를 둔 채 이상적인 것만 이야기하니까 현실은 현실대로 떨어져 있는 것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로자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근본이 무엇이며 그것을 푸는 데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접근하면서 그것을 풀어 왔다면 벌써 고쳐졌을 문제를 총론적이고 개념적인 것만 내세우다 보니 20여년이 지난 지금까지 진전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의 당사자가 모두 다 공통적으로 인식하는 것이라면 모든 당사자 쪽에서 가지고 있는 소외되었던 점, 허약한 요인들, 불신의 요인들을 이제 하나하나 정리해 나갈 시점이며 우선 몇 가지 급한 점은 기업주, 근로자, 의료기관이 가지고 있는 어떠한 저해요인들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세워야 합니다.

여기에 접근하기 위해서 이제는 이 사람은 특수검진 대상이며 이런 부서에는 이런 사람이 적당하다든가 질병자가 발견되었을 때는 작업전환이나 휴직을 시키기 위한 기준설정이 필요합니다. 또한 개인적으로나 직업병으로 환자가 되어 휴직하는 동안의 생활대책등 다각적으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하나하나 풀어 가기 위해서는 물론 주도적 입장에 있는 기업주가 해야 되겠지만 관계자 모두가 스스로 가지고 있는 의무와 사명감 밑에서 공동 노력해야겠다는 것을 강조

하면서 기업주의 비용부담 문제와 의료기관 검진수가 덤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보험처리할 수 있는 방향은 없겠는가 하는 건전한 방향의 제안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도 의료보험이 이루어져 있고 산재보험이나 공무원 연금, 사립학교 연금 등도 많은 진전을 보고 있으므로 향후 일반건강진단 부분은 의료보험적인 면에서 고려해 보고 특수건강진단 측면은 직업병하고 직결되는 것이니까 산재보험재원쪽에서 고려해 보아 현실적으로 풀어야 할 것입니다.

현재 산업보건협회나 정부쪽에서 집단보건관리제도라는 좋은 현실타개책을 생각하고 있는데 평상시 보건관리체제와 건강진단체제, 또 사후처리 및 진료체제를 어떻게 연결시켜 조화시켜 나가느냐 하는 문제는 정부나 협회에서 교통정리를 하고 넘어가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사 회 :오늘의 안고 있는 문제를 비판만 할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풀어 나가야 하며 그 방향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면 학계 쪽에서 보는 견해는 어떻습니까?

남 택승 교수 :근로자 건강진단은 동 제도가 시행된 이래 현재까지 실시되어 오면서 기대할 만큼의 발전과 성과에 미치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심지어는 무용론까지 대두되는 등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었다. 그러나 반면에 이 정도의 제도라도 없었으면 어떻게 되었겠는가 하는 생각을 갖게 합니다.

과거는 현재와 미래를 위해 항시 필요한 것이고 발전의 계기가 되는 것이다. 더우기 제도는 고착화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산업화사회의 발전, 환경의 변화에 적합하게 바뀌어야 합니다.

과거 20여년 동안 실시해 온 현재의 건강진단제도가 시대와 사회요구에 맞지 않는다면 당연히 바꾸어야 하고 과감히 개선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현 시점에서 과거를 돌이켜 볼 때 좋은 평가보다는 비판과 문제성을 안고 있었다고 한다면 이번 기회에 관계기관들의 중지를 모아 합리적인 제도 개선이 되기를 바라면서 몇 가지 보완대

책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일반건강진단에 참여하고 있는 의료기관들로 구성된 일반건강진단협의회를 조직하여 건강진단 업무의 효율적 수행과 개선을 도모하여 자율적 기능하에서 수수료 협의결정, 부실검진방지대책 및 개선방안 강구, 건강진단의 기술증진 등 공익적 사업 추진이 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동 협의회를 대한산업보건협회 산하에 두어 현재 특수검진기술협의회와 병행하여 상호보완적 위치에서 전체 근로자의 보건관리체제를 이루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되므로서 건강진단업무와 관련된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공권력의 개입없이 자율적으로 개선돼 나가리라고 확신합니다.

둘째, 공단 및 사업장 밀집지역에 한해서 집단보건관리체제가 확대 추진되도록 정부에서 법적 뒷받침이 있어야 합니다. 산업보건은 오랜 경험과 고도의 기술에 의한 예방의학대책이며 더우기 부족한 의료인력과 고가의 장비 등을 공동 활용하며 전문기관에게 위탁관리토록 함으로서 기업의 비용절감효과는 물론 실질적인 근로자 보건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새로운 제도에 대한 일부 또는 상관되는 저항을 의식할 필요없이 건강진단의 근원적 필요성과 목적등 살펴 확대 발전시켜야 합니다.

셋째, 우리나라 산업구조와 공정으로 볼 때 생산업체는 모두 특수검진대상이 되어야 한다. 생산업체의 경우 유해한 작업공정이 대부분이고 또한 시설 및 환경면에서 볼 때 그 사업장 전체 근로자가 직·간접적으로 유해환경속에 폭로되어 일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와 같은 건강진단체계에서는 일반과 특수를 분리하는 효과가 적다.

더우기 산업의 고도화로 인한 각종 유해, 화학물질의 제조, 취급이 급격히 증가하는 상황하에서의 작업환경은 반드시 취급부서만이 문제가 아니며 그 사업장 전체의 문제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사 회 : 건강진단을 실시하는 의료기관들이 기술적인 면이나 실시하는 책임면에서나 협의회 기구 조직을 통해서 효율적으로 근로자 건강보호

에 철저를 기해야 한다는 제의를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현재 부실검진이나 건강진단 기피등의 요인이 발생하는 책임문제에 있어서 정부 측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한 병익 국장 : 작년 한 해 동안에 건강진단에서 나타난 질병자 115,000명 중에서 직업병 환자 6,800명이 나왔습니다. 이 숫자가 다른 나라에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높다는 것도 더 말할 나위 없지만 우리나라 근로자들 건강문제가 극히 소홀하게 다루어지고 있다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책임을 정부입장에서도 당연히 져야 한다 생각하며 그간에 우리나라 근로자 건강진단 실시방법, 그 중에서도 특히 의료기관을 어떻게 지정할 것이냐 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1960년초부터 지금까지 여러가지 방법을 시도하였습니다. 그러나 건강진단 그 결과가 충실했다고 하는 경우는 다소 차이가 있겠지만 어느 경우도 신통한 호평을 받거나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여러가지 부작용이 생겼던 것은 틀림 없습니다.

최근의 방식은 일반건강진단의 경우는 검진을 실시할 수 있는 인원과 시설의 일정기준을 정해서 그 기준을 적용하여 노동부 지방사무소에 등록한 후 사업주와 당사자끼리의 약정하에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있으며, 특수건강진단의 경우는 의료기관을 노동부에서 지정하여 몇해동안은 잘 진행되어 왔다고 하나 현재 그로 인한 부작용이 다시 일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러한 부작용을 해결하기 위해 여러 전문가들과 공청회나 협의회를 구성하여 연구할 계획에 있으며 '87년부터는 다른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방안의 하나가 남택승 박사님께서도 말씀하신 집단보건관리 체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저희가 금년도 시도하는 것 중에 하나로 현재 법적 근거가 나와 있으며 특정한 의료전문기관으로 하여금 그 지역내의 사업장 전체를 맡아 정해진 규정아래 근로자 건강관리에 전반적인 책임을 지고 시행하도록 하는 방식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